

건설정책리뷰 2012-12

2012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이종광 · 박승국

2012. 1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지위남용에 의한 대금 체불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의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수급인이 늘어감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미비점이 노출되었으며 하수급인에게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지급보증과 관련된 제도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미교부시 하수급인이 미교부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도록 발주자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둘째,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사유중 우수협력관계업체인 경우, 회사채평가 BBB+ 등급이상인 경우, 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면제 요건에서 삭제하였으며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소규모 공사기준 금액을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 셋째,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징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였다. 넷째, 계약자(수급인)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책임의 발생 요건을 계약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금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정으로 성실하게 시공을 완료한 하수급인이 정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제도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가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확인시 직접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 가능성과 권리보호가 강화되었다. 둘째, 보증서 교부 면제 요건 축소와 지급 보증 위반시 행정 제재의 강화를 통한 교부율 제고가 예상된다. 셋째, 건설공제조합의 지급 보증책임 발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미수령 공사 대금 보호가 강화되었다.

목 차

1. 머릿말	1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정사항 및 의의	3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주요내용	11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효과	11
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내용	12
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	20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24
4. 맺음말	26

1. 머릿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제3자인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상품을 말하며 수급인의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4월 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하수급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화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채불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어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제도는 하수급인에게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중전의 지급보증제도 아래에서는 수급인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하수급인은 수급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향후 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를 우려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도 발주자에게 미교부 사실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관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 받은 수급인들의 빈번한 경영상태 악화와 부도로 인하여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켰으며 관련된 자재업체와 장비업체 등에게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로 발급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발생이 수급인의 부도, 등록말소 및 폐업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하도급대금이 체불되어도 수급인에게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회의(2012년 4월 25일)에서 공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이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사항을 축소한 시행규칙 제28조는 2012년 12월 5일에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금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정취지와 개정상세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지급보증제도의 체계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정사항 및 의의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하수급인의 요청 없이도
발주자가 사실 확인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 “하수급인 요청에 의한 직접 지급” 또는 “발주자의 미교부 확인시 직접
지급(신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하수급인의 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의해서만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안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동안 하수급인은 수급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향후 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를 우려하여¹⁾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도 발주자에게 미교부 사실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임의규정이었던 수급인의 지급보증의무 위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건을 발주자가 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 없이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게 되어 지급보증서 교부율을 제고시키는 효과²⁾가 나타나

1) 대한전문건설협회(2012년)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p. 149)’에 의하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기피의 주요 사유로 수급인과의 좋은 관계 유지 희망(하수급인의 58.3% 응답) 및 향후 수급인의 직·간접 압력이 우려(하수급인의 13.3% 응답) 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한전문건설협회(2012년)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p. 127)’에 의하면 하도급공사 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절반에 가까운 45.8%의 하수급인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의 확대실시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희망하였다.

게 되며,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미교부 사실 확인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와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개정 내용(2012년 12월 18일 개정)

개정전 조문	개정 조문
<p>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p> <p>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p>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p>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p> <p>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p>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의 축소

: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 등을 면제사유에서 삭제시키고 면제 소
규모 공사 기준금액을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지
급보증서 면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있다.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서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과 하도급계
약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일
것,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수급인이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
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
해 수급인의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해주었으며,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
급을 받은 경우,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
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
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해주었
다.

이러한 면제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수급인의 경영상태 및 재무 구조가 우수한 경우 하도
급대금이 연체되거나 수급인의 부도의 위험이 낮아 하도급 대금의 지
급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대금 지급 보증이 필요 없다고 보아 지급 보
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우수협력업체로 평가받거나 회사채평
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수급인의 부도 등 경영상
태가 악화되는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중 법정관리가 10개사, 워크아웃이 11개사에 이르는 등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³⁾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받은 업체에 의한 하도급대금 체불은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업체, 장비업체 등으로 연쇄피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사항에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회사채 평가 BBB+ 등급 이상의 업체기준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증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를 면제 사항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소규모 공사 기준 금액을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은 소규모 공사에서 더욱 빈번한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표 2-2> 개정 내용 참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의 축소 개정을 통하여 수급인의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 대한건설협회(201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개사 워크아웃, 법정관리(신청포함) 현황

<표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개정 내용(2012년 12월 5일 개정)

개정전 조문	개정 조문
<p>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p> <p>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일 것</p> <p>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p> <p>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p> <p>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p> <p>3. 삭제</p> <p>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p> <p>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p>	<p>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p> <p>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삭제)</p> <p>가. (삭제)</p> <p>나. (삭제)</p> <p>다.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p> <p>5. (현행과 같음)</p>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시 행정 제재 강화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5천만원 → 1억원으로 증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수급인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수급인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2-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개정 내용(2012년 6월 1일 개정)

개정전 조문	개정 조문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책임 발생 요건 개정

: 계약자(수급인)의 파산시 → ‘계약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95.6%가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발행에 의하여 이루지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의 종전 지급보증책임 발생요건이 계약자(수급인)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보증책임 발생 요건이 보수적이고 협소하여 계약자(수급인)가 부도 등을 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체불하여도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급보증 청구 요건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책임 발생 요건을 ‘계약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보증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약요인이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지연요인으로 작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요건이었던 ‘보증채권자(하수급인)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는 주계약의 해제·해지 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종전에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했지만 이번의 약관 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계약을 유지한 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주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건 삭제에 따른 조치로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성 인정기준도 ‘타절 기성검사’에서 ‘기성검사’로 개정되었다.

이번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약관이 개정됨으

로써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게 되어 보증채권자인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상품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 개정전>

- 보증금 지급(보증책임) : 수급인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시에만 보증금 지급
- 보증금 청구 : 주계약(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만 보증금 청구 가능
- 기성 인정 : 타절 기성검사를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 개정후>

- 보증금 지급(보증책임) : 법정기일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금 지급(확대)
- 보증금 청구 : 주계약 해제 또는 해지요건 삭제(완화)
- 기성 인정 : 기성검사를 기준(완화)

<표 2-4>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개정 내용(2012년 5월 25일 개정)

개정 조문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 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경우 감리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주요내용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효과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고 수급인은 그에 따른 대가 즉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경기변동이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수급인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발주자도 건설공사 중단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이와 같이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계약이행보증과는 상반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금으로서 선급금을 공제한 기성금의 지급이행을 금융기관의 명의로 보증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금융면에서 책임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원·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계약이행에 대해서 일방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과 비교하면, 하수급인의 경제적 입장을 지지·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내용

(1)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역시 동일한 조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2항에서는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과 지급보증의 예외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과 지급보증의 예외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3-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 -영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 -영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단,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수급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면제 기준 이상인 경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음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단,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급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면제 기준 이상인 경우,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면제함

(2) 보증 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공사기간과 기성금 지급 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전부이며,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성금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와 기성금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 월수로 나누고 이에 4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 월수로 나누고 이에 기성금 지급 주기(월수)를 곱하고 다시 이에 2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산정 방법과 공사 사례별 예시를 <표 3-2>와 <표 3-3>에 나타내었다.

<표 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공사기간	지급주기	보증금액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공사기간 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 기성지급 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3) 기성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times 2 \text{ 지급주기}$

<표 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예시

공 사 사 례(예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금액(예시)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4개월(4개월 이하) -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 선급금: 2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원 - 계약금액의 80%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10개월(4개월 초과) -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 선급금: 20,000,000원 - 기성주기: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00 - 20,000,000)÷10×4 = 32,000,000원 - 계약금액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10개월(4개월 초과) -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 선급금: 20,000,000원 - 기성주기: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00 - 20,000,000)÷10×3×2 = 48,000,000원 - 계약금액의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6개월(4개월 초과) -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 선급금: 없음 - 준공시 대금 전액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주기를 1회로 간주 (100,000,000 - 0)÷6×1(기성주기)×2 = 33,333,333원 - 계약금액의 33.333%

(3) 보증서 교부시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교부되어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늦어도 하수급인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14-가).

(4) 보증서 발급기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증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

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13조의2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있다(하도급법 제13조의2제2항).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의 변경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변경사유는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와 수급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가)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14-나).

나) 수급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대상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사업자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승계 당시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14-라).

(6) 보증서 발급 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또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표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금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56호, 2010년 12월 10일)

공 사 규 모		적 용 요 율
50억원 미만		0.070%
50억원 ~ 100억원 미만		0.069%
100억원 ~ 300억원미만		0.064%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5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58%
턴키 · 대안공사		0.073%

-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7) 보증 기관 및 발주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급인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하도급법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단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 계약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고, 지급 보증에 대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하도급 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공동도급에 의한 하도급에 있어서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다른 하도급 거래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 이

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의 취지는 재무 구조가 아주 우수한 수급인의 경우,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대금 지급 보증이 필요 없다고 보아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정 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채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기 상환 능력이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 어음과 달리 장기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건설 하도급의 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회사채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아니라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평가대상인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14-바). 하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증의무가 면제된 수급인이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14-라 및 마).

2012년 6월 21일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는 <표 3-6>과 같다.

<표 3-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
<p>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1.11.3></p>	<p>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u>회사채 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u>을 받은 경우</p>	<p>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u>신용평가에서</u>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u>기준 이상의 등급*</u>을 받은 경우</p>
<p>4. 1건의 하도급공사의 <u>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u></p>	<p>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u>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u></p>
<p>5. 발주자가 <u>하도급대금을</u> 하수급인에게 <u>직접 지급한다는</u>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p>	<p>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u>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u> 경우(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p>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4호, 개정 2012. 8. 20).

<표 3-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업체 명단(2012년 6월 21일 기준)

연번 (가나다순)	상 호	대표자	지 역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비 고
				한기평	한신평	한신평	
1	계룡건설산업(주)	한승구	대 전	A-	-	A-	
2	대림산업(주)	김 윤	서 울	AA-	AA-	AA-	
3	대성산업(주)	김영대	서 울	A	A	A	
4	(주)대우건설	서종욱	서 울	A+	A	A+	
5	대우조선해양(주)	고재호	서 울	AA-	-	AA-	
6	대한통운(주)	이현우	서 울	A+	A	AA-	
7	두산중공업(주)	한기선	경 남	A+	A+	A+	
8	롯데건설(주)	박창규	서 울	A+	-	A+	
9	삼성물산(주)	정연주	서 울	AA-	AA-	AA-	
10	삼성중공업(주)	노인식	서 울	AA-	-	AA-	
11	(주)서브원	박규석	서 울	AA-	AA-	-	
12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박승환	경 기	A	-	A	
13	에스케이건설(주)	조기행	서 울	A+	A+	A+	
14	웅진코웨이(주)	홍준기	충 남	A+	-	A+	
15	지에스건설(주)	허명수	서 울	AA-	AA-	AA-	
16	(주)케이알산업	손 정	경 기	A-	A-	-	
17	(주)케이티네트웍스	김영환	서 울	-	A	A	
18	(주)태영건설	박종영	경 기	A	-	A	
19	(주)포스코켄텍	김진일	경 북	-	A	A+	
20	(주)포스코건설	정동화	경 북	AA-	-	AA-	
21	한국전력기술(주)	안승규	경 기	AA	-	AA	
22	한라건설(주)	정몽원	서 울	A-	-	A-	
23	(주)한진중공업	송화영	부 산	A	A	A	
24	(주)한화건설	이근포	경 기	A-	A-	A-	
25	현대건설(주)	정수현	서 울	AA-	AA-	AA-	
26	현대로템(주)	이민호	경 남	A	A	A	
27	현대산업개발(주)	정몽규	서 울	A+	A+	A+	
28	현대엠코(주)	손효원	서 울	A+	A+	-	
29	현대엔지니어링(주)	김위철	서 울	A+	A	-	
30	현대엘리베이터(주)	한상호	경 기	-	A	A	
31	현대중공업(주)	이재성	울 산	-	A+	AA+	
32	(주)효성	이상운	서 울	A+	A+	A+	

※ 공란(-)은 해당기관에서 회사채평가 미실시

※ 두산건설(주)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한국기업평가: A- → BBB+, 한국신용평가: A- → BBB+, 한신평평가(주): A- → BBB+)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1)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를 위반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가목)
-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나목)
-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다목)

(2)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 위반시의 행정 제재

가)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건설업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국토해양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제1항).

나) 영업정지·과징금 및 등록 말소

국토해양부장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또한 국토해양부장은 건설업자가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행정제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4. 맺음 말

하도급은 본격적인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일관생산이 가지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분업적 생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에서도 하도급 생산은 이미 정착 된지 오래이며 그 중요성이 앞으로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산의 대가 즉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는 건설업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수행시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다른 산업에 뒤지지 않는 확고한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생산에 소요 되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책임을 공유하느냐가 관건이며, 성실히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금번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성실하게 건설공사 시공을 완료한 하수급인이 정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건설하고 우수한 하도급업체가 성장발전 할 수 있는 토대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

- 이종광, 연구위원(jglee@ricon.re.kr)
- 박승국, 책임연구원(skpark@ricon.re.kr)